

## 뱅크웨어글로벌(주)

[04516]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19, B동 12층 (정동, 배재정동빌딩)

TEL: (02)501-6415 / FAX (02)501-6416 / Website: <http://www.bankwareglobal.com>

### [ 별첨 1 ]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개정상법 반영)

정관 변경 전	정관 변경 후	정관 개정 사유
제 11 조의 2 (주식매수선택권) 회사는 임·직원(이사·집행임원·감사 또는 피용자를 의미하며, 이하 같음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상법 제 340 조의 2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	제 11 조의 2 (주식매수선택권) 회사는 임·직원(이사·집행임원·감사 또는 피용자를 의미하며, 이하 같음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<u>100분의 15</u> 이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상법 제 542조의3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	상법상 상장회사 한도인 15% 범위로 수정
제 15 조 (전환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	제 15 조 (전환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<u>500억원을</u>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	중장기 자본조달 유연성 확보를 위해 발행한도 증액
제 16 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	제 16 조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<u>500억원을</u>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	중장기 자본조달 유연성 확보를 위해 발행한도 증액
제 20조 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,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	제 20조 (소집지와 개최방법)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,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일부가 총회의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참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	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개정 내용 반영
제 29 조 (이사의 수)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, 사외 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	제 29 조 (이사의 수)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, <u>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,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</u>	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, 이사회 내 인원수 비율 변경하는 상법개정 내용 반영
제 36조 (이사의 의무)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	제 36조 (이사의 의무)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<u>회사와 주주</u>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<u>회사와 주주</u>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	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개정 내용 반영